

## 2010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고용장려금 개정내용 요약

적용기간	2009. 12. 31.까지					2010. 3. 31.까지					2015. 12. 31.까지				
고 용 률	2.0%					2.7%					2.7%				
지급단가	구분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구분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구분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30%이하	300,000	375,000	375,000	450,000	30%이하	300,000	375,000	375,000	450,000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100%)	300,000	400,000	400,000	500,000
	30%초과	400,000	500,000	500,000	600,000	30%초과	400,000	500,000	500,000	600,000	입사3년초과 만 5년까지 (70%)	210,000	280,000	400,000	500,000
	-지급단가와 월평균 임금액의 75%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지급단가와 월평균 임금액의 75%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고용된 근로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 우에는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 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기준인원 산 입	최저임금 이상자를 우선 산입하되 경남→경여→중남→중여 순으로 산입					최저임금 이상자를 우선 산입하되 경남→경여→중남→중여 순으로 산입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 일한 경우 장애정도와 성별을 고 려하여 경증·남성 순서로 산입				
특이사항	-					-					-6급은 만 4년까지만 지원('11.1.1.부터)				
최저임금 적용여부	무관					무관					최저임금 이상과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대상자만 지급				

적용기간	2016. 12. 31.까지					2017. 12. 31.까지					2018. 1. 1.부터				
고 용 률	2.7%					2.9%					2.9%				
지급단가	구분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구분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구분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100%)	300,000	400,000	400,000	600,000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100%)	300,000	400,000	400,000	600,000	지급단가	300,000	400,000	500,000	600,000
	입사3년초과 만 5년까지 (70%)	210,000	280,000	400,000	600,000	입사3년초과 만 5년까지 (70%)	210,000	280,000	400,000	600,000					
	만5년 초과 (50%)	150,000	200,000	400,000	600,000	만5년 초과 (50%)	150,000	200,000	400,000	600,000					
	* 고용된 근로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고용된 근로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고용된 근로자가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기준인원 산 입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장애정도와 성별을 고려하여 경증·남성 순서로 산입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장애정도와 성별을 고려하여 경증·남성 순서로 산입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장애정도와 성별을 고려하여 경증·남성 순서로 산입				
특이사항	-6급은 만 4년까지만 지원('11.1.1.부터) -중증여성 60만원('16.1.1.발생분 부터)					-6급은 만 4년까지만 지원('11.1.1.부터) -의무고용률 2.9%('17.1.1.부터)					-근속연차별 경증금액 및 6급 4년 한시 지원 폐지('18.1.1.부터) -중증남성 50만원('18.1.1.발생분 부터)				
최저임금 적용여부	최저임금 이상과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대상자만 지급					최저임금 이상과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대상자만 지급					최저임금 이상자(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포함)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자 ('18.1.1.부터)				